#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26

발의연월일: 2024. 9. 4.

발 의 자:이연희·박홍배·박상혁

문진석 • 김정호 • 이정문

김윤덕 • 이춘석 • 김남희

안태준 · 허종식 · 서미화

홍기원 • 한민수 • 복기왕

이광희 의원(16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서울시청 부근에서 발생한 자동차 급발진 사고로 9명의 사망자가 나오는 등 자동차 가속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사고 원인을 두고 운전자의 과실 또는 혼동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차량의 결함 때문인지 운전자와 제작사 간에 입장 차이가 발생하고있음.

또한,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원인이 운전자의 과실일 경우 그 대부분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착각하는 등 페달 오조작 때문일가능성이 매우 높음.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정확한 원인 규명과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페달영상기록장치와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등 첨단안 전장치의 장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음. 특히 일본 의 경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022년부터 신차에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부착을 의무화했음.

이에 자동차제작・판매자등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페달영상기록장치와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등 교통사고의 방지 및 사고의 원인규명에 필요한 첨단안전장치를 장착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첨단안전장치의 개발을 위한 보조금, 장치의 장착 확대를 위한 장착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신설).

#### 법률 제 호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9조의4(첨단안전장치의 장착과 지원 등) ①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은 차종, 용도, 승차인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동차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페달영상기록장치와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등 교통사고의 방지 및 사고의 원인규명에 필요한 첨단안전장치(이하 "첨단안전장치"라 한다)를 장착하여야 한다.
  - ②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제1항에 따라 첨단안전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첨단안전장치가 장착되어 있음을 구매 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첨단안전장치의 장착기준, 장착사실의 통지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첨단안전장치의 개발을 위한 보조금과 장착 확대를 위한 장착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및 장착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첨단안전장치의 장착과 지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4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작·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동차부터 적 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29조의4(첨단안전장치의 장착 과 지원 등) ① 자동차제작· 판매자등은 차종, 용도, 승차인 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는 기준에 따른 자동차에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페달영상기록장치와 페달오 조작방지장치 등 교통사고의 방지 및 사고의 원인규명에 필 요한 첨단안전장치(이하 "첨단 안전장치"라 한다)를 장착하여 야 한다. ②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이 제 1항에 따라 첨단안전장치가 장 착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에는 첨단안전장치가 장착되어 있음을 구매자에게 알려야 한 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첨 단안전장치의 장착기준, 장착사 실의 통지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첨단안전 장치의 개발을 위한 보조금과 장착 확대를 위한 장착비용 등 을 지원할 수 있다.
- ⑤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및 장

   착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

   토교통부렁으로 정한다.